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

(박성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26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4월 일

발 의 자 : 박성호, 송순효, 김현희, 정정희,
박주선, 송영섭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강서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서구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- 나.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 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- 라. 국기 게양 관리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마.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국기법」,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
- 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- 다. 입법예고: 2020. 4. 14. ~ 2020. 4. 19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·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민국 국기”(이하 “국기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태극기(太極旗)를 말한다.
2. “국기선양”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3. “가로기”란 가로(街路)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국기 게양일 등)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2. 강서구민의 날(매년 9월 1일)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자율에 맡겨야 한다.

제5조(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기선양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
2.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
3.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국기 게양 관리)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 ·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,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오염 · 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표창)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, 기관·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